

#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06
----------	-----

2014년 12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4년 9월 16일, 이정훈 의원 외 23명
- 나. 회부일자 : 2014년 9월 23일
- 다. 상정일자 :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 12월 2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정훈 의원)

### 가. 제안 이유

- 범죄피해 시민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나.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관련 기관의 협조를 의무화함(안 제5조, 안 제6조).
-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한 지원을 규정(안 제8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나. 입법예고(2014. 9. 23 ~ 9. 30) 결과 : 입법의견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한태식)

###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에 대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관련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음.

#### 〈조문 구성 내역〉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안 제1조 : 목 적</li><li>- 안 제2조 :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구조대상 범죄피해”,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정의</li><li>- 안 제3조 : 시장의 책무</li><li>- 안 제4조 : 시민의 책무</li><li>- 안 제5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li><li>- 안 제6조 : 관계기관의 협조</li><li>- 안 제7조 : 홍보 및 교육</li><li>- 안 제8조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한 지원</li><li>- 안 제9조 : 시행규칙</li></ul> |
|---|

- 「대한민국헌법」 제30조1)에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의 구조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행형상의 인권 개선폭과 비교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개선은 여전히 부진한 실정임.

1) 「대한민국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 제5조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와 관련하여 조례 제정 등 서울시 차원의 시책 마련은 부족하였다고 보임.
  - ※ 법 13조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음.
  - ※ 2014년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지원현황
    - 서울시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3천만원 지원
    - 자치구 : 7억 6,715만원 지원
- 때문에 시민들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함과 동시에 서울시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책 수립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제정조례안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 나. 세부 내용 검토

### 1)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구조대상 범죄 피해”,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하여 「법」 제3조의 정의규정을 준용하는 대신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시 소재 등록 법인으로 지역적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범위에 법은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제외하고 있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 ‘중상해’의 정의는 누락되어 있는바, 명확한 정의를 위해 이를 조례안에 규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으나, 이와 관련하여 법에 명확한 정의 규정이 있어 법 해석상의 오해는 소지는 적다고 판단됨.

## 〈법 및 제정안 정의 비교〉

법	제 정 안
<p><b>제3조(정의)</b>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li> <li>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u>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u></li> <li>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li> <li>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li> <li>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li> <li>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li> </ol> <p>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p>	<p><b>제2조(정의)</b>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u>을 말한다.</li> <li>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li> <li>3.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li> <li>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u>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법인</u>을 말한다.</li> </ol> <p>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p>

### 2) 시장과 시민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 안 제3조는 시장이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안 제4조는 시민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제6조에 국민의 책무가 있는 바, 법의 취지 및 시민들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인권문제라는 인식을 제고시키고 서울시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취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사료됨.

※ 「법」 관련 규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3)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안 제5조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안 제5조제1항),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안 제5조제2항).

-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법」은 국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범죄피해자의 상담, 의료 제공, 법률구조 등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법 제7조),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법 제9조),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필요한 교육과 훈련(법 제10조)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본 제정안의 취지대로 「법」 제12조의 기본계획<sup>2)</sup>의 수립사항에 대한 시책 마련과 아울러 서울시의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시행계획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력, 예산 충원이 필요하므로 향후 시행계획 수립 시 인력 및 예산확충계획도 함께 수립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사료됨.

#### 4) 관계기관의 협조 및 홍보 및 교육(안 제6조, 제7조)

- 안 제6조와 제7조는 관계기관의 협조 및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효율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지원체제를 다각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법 제10조 및 제11조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 재정지원(안 제8조)

- 안 제8조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

2) 법 12조(기본계획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교육과 홍보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과 감독
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과 운용
5. 그 밖에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해서는(안 제2조제1항제4호)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시에 소재한 법인’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등록된 법인은 60개이나 서울시에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 등 5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센터가 활동하고 있음.

〈서울시 소재 등록법인〉

센터명	소재지	관할자치구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하 1층 111호	관악, 동작, 서초, 강남, 성북, 종로, 중구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44호	강동, 송파, 광진, 성동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709호	서대문, 용산, 마포, 은평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613호	금천, 구로, 양천, 영등포, 강서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17호	도봉, 강북, 노원, 중랑, 동대문

자료: 이정훈 발의의원 보도자료(2014. 9. 18)

- 법 제34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바, 이들 법인의 활동과 실태에 대해 조사 후 적정 예산을 반영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법 제34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전원찬성).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